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6일, 신정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6.02.0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1.) 상정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6.) 상정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7.) 상정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 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6.03.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
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신정훈의원)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안전요건을 위반한 불법 개조와 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픽시자전거를 포함한 일반 자전거의 위험한 개조와 운행에 대해서는 법 적용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동장치가 제거된 픽시자전거는 법률상 자전거 정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실제로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행하던 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망에 이른 사고까지 발생한 바 있어, 자전거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전거에 한정되어 있는 안전요건 규율 대상을 자전거 전체로 확대하여, 자전거에 대한 안전요건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자전거의 제동장치 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같이 안전요건을 위반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벌칙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제동장치 제거 등으로 사실상 제어가 어려운 상태의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와 도심 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이용자의 생명·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과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전반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요건을 준수

한 정상적인 자전거 이용과 생활교통 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활성화는 보호하되, 고의적인 안전장치 제거와 같은 위험한 행태는 법적으로 엄정하게 통제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 등 4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